2 「공무수행사[ ]」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

[redacted]

1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서의 공무수행사인

※ 청탁금지법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의 약칭

- 공무수행사인이란?
  - 각종 위원회 위원(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)
    (예시)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  -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
  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자
  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를 하는 자

- '공무 수행과 관련' 하여서만 청탁금지법을 적용

- 부정청탁이란?
  -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·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(아래)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
〈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(법 제5조제1항) 〉

① 인·허가·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
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·면제 직무
③ 채용·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
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·탈락 관련 직무
⑤ 각종 수상·포상 등 선정·탈락 직무
⑥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
⑦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 관련 직무
⑧ 보조금·기금 등의 배정·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
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
⑩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 등 관련 직무
⑪ 병역 관련 직무
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관련 직무
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관련 직무
⑭ 수사·재판·심판·결정·조정·중재 등 관련 직무